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제19조의2 중 “2015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및 같은호 나목의 단체활동실의 기준란 기호(·) 중 “공간”을 “공간 (다만, 시설 수용정원이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수용정원 120%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

같은 표 제1호마목의 비고 중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조리실·식당 또는 세탁·건조장

3. 화장실·목욕실 또는 세탁·건조장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장부 및 서류”를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u>	4. <u>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 대해 <u>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u>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u>2025년 1월 1일</u> ----- <u>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u> ----- -----.
[별표 3]	[별표 3]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제17조 관련)

1.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가. 일시 청소년쉼터

1) 고정형

구분	기준
단체활동실	■ 최대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나.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구분	기준
단체활동실	■ 최대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마.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비고 : 다음 각 호의 시설 간에는 하나의 공간에 설치하여 겸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숙직실 또는 상담실
2. 조리실·식당, 화장실·목욕실 또는 세탁·건조장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기준

나. 장부 등의 비치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 관련)

1.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가. 일시 청소년쉼터

1) 고정형

구분	기준
단체활동실	■ 최대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다만, 시설 수용정원이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수용정원 120%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나.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구분	기준
단체활동실	■ 최대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다만, 시설 수용정원이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수용정원 120%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마.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비고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조리실·식당 또는 세탁·건조장
3. 화장실·목욕실 또는 세탁·건조장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기준

나. 장부 등의 비치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272